

세월호 참사 이후, 국회의원들은 어떤 법안을 발의했나?

‘세월호 관련 법’ 발의 현황 이슈리포트

1. 세월호 침몰 참사 이후 관련법 100건 발의

-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국회에는 4월 21일부터 ‘세월호 관련 법안’이 발의되기 시작했고, 5월 23일까지 33일간 총 501건의 법안 중 100건의 ‘세월호 관련 법안’이 발의됨.

2. 주제별 법안발의 현황



- 주제별로 법안발의 현황을 살펴보면, ▲안전 관리 및 교육 관련 법안이 41건 발의되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서 ▲선박 등 해난사고 관련 법안이 29건, ▲재난 대응 관련 법안이 18건, ▲세월호 참사 피해자 지원 및 진상규명 관련 법안이 7건, ▲공직자 퇴직

후 취업제한 법안이 5건 발의되었음.

- **총 41건 발의된 안전관리 및 교육 관련 법안**은 크게 1) 일반 안전 법안(3건), 2) 학교, 학생안전 법안(31건), 3) 건축, 철도 안전 법안(7건)으로 구성되어 있음. 이 중 학교, 학생 안전 법안은 ▲교육 활동 전 안전점검 및 교육 강화 법안(5건), ▲안전사고 관련 교육 강화 법안(6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학생 안전 관련 대책 마련 법안(14건), ▲교육 활동의 안전수준 강화 법안(5건), ▲기타 법안(1건)으로 구성되어 있음.

<안전관리 및 교육 관련 법안>

대분류	소분류	발의건수
일반 안전(3건)		3
학교, 학생 안전 (31건)	교육활동 전 안전점검 및 교육 강화	5
	안전사고 관련 교육 강화	6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학생안전관련 대책 마련 강화	14
	교육 활동의 안전수준 강화	5
	기타	1
건축, 철도 안전(7건)		7
합계		41

- **총 29건 발의된 선박 등 해난사고 관련 법안**은 크게 1) 선박안전관리 법안(22건)과 2) 선장 등의 구조의무 강화 법안(7건)으로 구성되어 있음. 이 중 선박안전관리 법안은 ▲선박 안전 기준 및 장비 등 강화 법안(9건), ▲선박 안전 관련 벌칙 강화 법안(4건), ▲선박 안전 훈련 및 안내 강화 법안(4건), ▲승선신고 관리 강화 법안(4건), ▲기타 법안(1건)으로 구성되어 있음.

<안전 관리 및 교육 관련 법안>

대분류	소분류	발의건수
선박안전관리(22건)	선박 안전 기준 및 장비 등 강화	9
	선박 안전 관련 벌칙 강화	4
	선박 안전훈련 및 안내강화	4
	승선신고 관리 강화	4
	기타	1
선장 등 구조의무(7건)		7
합계		29

- **총 18건이 발의된 재난 대응 관련 법안**은 크게 1) 재난 대응 체계개선 법안(7건), 2) 재난 피해자 등 보상 및 지원개선 법안(9건), 3) 재난 관련 보도 개선 및 표현 규제 법안(2건)으로 구성되어 있음. 이 중 재난 피해자 등 보상 및 지원 개선 법안은 ▲재난 피해자에

대한 상담, 심리치료 등 지원 강화 법안(4건), ▲재난 피해자 가족 보상 및 지원 범위 확대 (4건), ▲의사상자 범위 확대 법안(1건)으로 구성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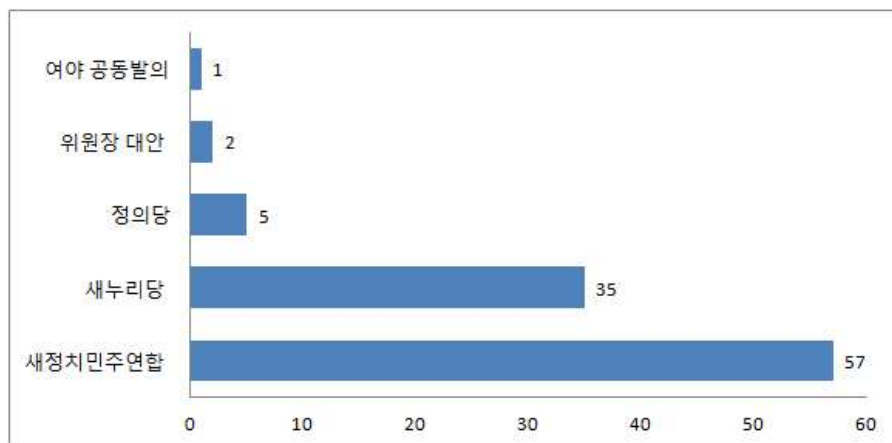
<재난 대응 관련 법안>

대분류	소분류	발의건수
재난대응체계 개선(7건)		7
재난피해자 등 보상 및 지원 개선(9건)	재난 관련자에 대한 상담, 심리치료 등 지원 강화	4
	재난 피해자 가족 보상 및 지원 범위 확대	4
	의사상자 범위 확대	1
재난관련 보도개선 및 표현 규제(2건)		2
총계		18

- 그 외에도 세월호 사고의 피해자 지원 및 진상규명 법안 7건, 공직자의 퇴직 후 취업제한 강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5건이 발의되어 있음.

3. 정당별 / 의원별 법안발의 현황

- ‘세월호 관련 법안’의 정당별 발의 현황을 살펴보면, ▲새누리당 의원들이 35건의 법안을 발의했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57건, ▲정의당 의원들이 5건의 법안을 발의함. 이외에도 상임위 논의를 거쳐 위원장 대안이 2건 발의되어 4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됐고,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 건’은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공동으로 발의함.



- ‘세월호 관련 법안’을 발의한 의원은 중복을 제외하고 총 47명임. 이 중 새누리당 의원이 총 21명이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4명, 정의당 의원이 2명임.

- 정당별로 법안을 발의한 의원을 살펴보면, 새누리당(21명)은, 김명연, 김성찬, 김을동, 김재원, 김한표, 김현숙, 류지영, 박대출, 박인숙, 박창식, 서청원, 성완중, 손인춘, 심윤조, 윤명희, 윤상현,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이우현, 한선교 의원이고,
- 새정치민주연합(24명)은, 강창일, 김경협, 김광진, 김상희, 김영환, 도종환, 문희상, 민홍철, 박민수, 박혜자, 박홍근, 백재현, 신학용, 안민석, 유기홍, 유대운, 윤관석, 이목희, 이언주, 이찬열, 인재근, 장하나, 전순옥, 한정애 의원,
- 정의당은(2명)은 김제남, 정진후 의원임.
- 안전행위원회 김태환 위원장,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신학용 위원장이 각각 세월호 침몰 사고 신속구조, 피해지원 및 진상규명을 위한 결의안(대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하여 4월 29일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음.

4. 주제별 발의법안 소개

1. 선박 등 해난사고 관련 법안 : 29건

1) 선박 안전관리 : 22건

- 선박안전 기준 및 장비 등 강화 : 9건

번호	법안명	발의자	정당	발의일자	주요내용
1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2인)	민홍철	새정치민주연합	2014-04-23	국내항행에 종사하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여객선 및 여객선 이외의 선박으로서 총톤수 3천 톤 이상의 선박의 경우도 항해자료 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 함.
2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우현의원 등 11인)	이우현	새누리당	2014-04-24	선박운항 관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톤 수 이상의 여객선에 안전관리 전문 인력의 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3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의원 등 10인)	강창일	새정치민주연합	2014-04-25	국내항해 선박의 선박시설 기준을 정할 때 항해자료 기록 장치를 의무화하는 등 국제해사기구가 정한 선박 시설 기준을 따르도록 함.
4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의원 등 10인)	이찬열	새정치민주연합	2014-05-07	여객선의 증·개축의 금지를 명문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처벌(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함.
5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의원 등 10인)	김경협	새정치민주연합	2014-05-12	선박직원의 최저 승무 기준을 정할 때 선박의 크기 이외에도 여객정원과 크기를 고려하도록 함.
6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의원 등 12인)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2014-05-12	선박교통관제 법적 기반 강화, 관제사에게 교통관제 관련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 부과 및 명령권 부여, 선박에 대해 관제통신 청취의무, 특이사항 보고의무, 관제사 명령 준수 의무 등을 부과함. 관제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근거 마련하고, 의무 위반 시 등의 벌칙 강화함.
7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이노근의원 등 12인)	이노근	새누리당	2014-05-16	여객선 안전운항에 책임이 있는 선장을 포함한 선원에게 운항 중 제복 착용의 의무를 부과함.
8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류지영의원 등 13인)	류지영	새누리당	2014-05-19	관제구역을 지나는 선박에 관제통신과의 교신을 녹음하고 이를 3개월간 보존하도록 함

9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진의원 등 11인)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2014-05-23	해운법의 적용을 안 받는 유·도선 사업자(유람선등)가 영업할 수 있는 선박의 선정기준을 정하고, 유·도선 사업의 면허를 발급하거나 신고를 수리할 때 이 선정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도록 함.
---	----------------------------------	-----	---------	------------	---

- 선박 안전 관련 벌칙 강화 : 4건

번호	법안명	발의자	정당	발의일자	주요내용
1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의원 등 10인)	이찬열	새정치민주연합	2014-04-24	운항관리자가 관리 감독 업무를 부실하게 하는 경우 벌칙조항(300만원 이하 벌금)을 신설함.
2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의원 등 12인)	박인숙	새누리당	2014-04-25	선박검사증서에 담당공무원 명기, 안전승무원 배치, 안전물품의 비치, 선박항해기록장치 설치 의무화 등을 규정하고, 벌칙 규정을 강화함(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선박의 조난에 영향을 미친 자의 벌칙규정을 신설함(3년 이상의 징역).
3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의원 등 10인)	윤명희	새누리당	2014-04-25	운항관리자가 선원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 및 안전 화물적재 한도, 구멍기구 등 사전 점검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벌칙조항을 강화(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함.
4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심윤조의원 등 11인)	심윤조	새누리당	2014-05-02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 및 사업장에 대해 선장, 선박소유자 등에게 자료제출이나 보고 등을 하도록 하는 현행규정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강화함. 선박시설의 보완이나 대체 등의 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처벌의 수위를 높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선박안전훈련 및 안내 강화 : 4건

번호	법안명	발의자	정당	발의일자	주요내용
1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의원 등 15인)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2014-04-28	선장은 여객선과 총톤수 500톤 이상 선박에 비상배치표를 비

					치하고, 매월 1회 소방훈련 및 구명정 훈련(여객선은 10일마다 실시) 등을 실시할 것을 법률로 규정하고, 과태료의 부과액을 상향조정함.
2	수난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윤조의원 등 11인)	심윤조	새누리당	2014-05-02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여객선 소유자에게만 부과하고 있는 여객선 비상수색구조 계획서의 작성 및 신고 의무를 내항 여객선 소유자에게도 적용함.
3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류지영의원 등 12인)	류지영	새누리당	2014-05-19	시행규칙에 규정된 선장의 비상훈련 및 안내 의무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선원당직국제협약을 적용받는 선박소유자는 해양사고에 대비하여 비상 선상훈련을 실시하도록 함. 승객들에 대한 선장의 책임을 강화하고 안전을 위한 교육 및 훈련 의무를 강화 함. 과태료 규정을 정비하여 선장 및 선사의 선박 안전의무사항을 위반할 시의 과태료를 상향함.
4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심윤조의원 등 13인)	심윤조	새누리당	2014-05-23	여객선의 선장에게 반드시 출항 전에 여객선에 탑승한 여객에게 구명동의 착용법, 비상 탈출구의 위치 및 비상탈출요령 등을 포함한 여객선내 비상시 대처방법을 안내하도록 하고 관련 내용을 여객이 자주 출입하는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할 의무를 부여함.

- 승선신고 관리 강화 : 4건

번호	법안명	발의자	정당	발의일자	주요내용
1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의원 등 10인)	이찬열	새정치민주연합	2014-04-25	여객운송사업자가 승선신고서를 보관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500만 원 이하) 부과, 여객운송사업자의 승객 신분증 확인 의무화, 승선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승객에게 과태료(500만 원 이하) 부과함.
2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의원 등 11인)	김성찬	새누리당	2014-04-30	여객운송사업자는 승객이 승선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실제 그 승객이 승선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근거를 만들고, 위반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신설함.
3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의원 등 10인)	이명수	새누리당	2014-04-30	여객이 승선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이를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 요구를 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승선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여객운송사업자가 이를 지키

					지 않았을 경우에는 형사 처벌(300만 원 이하 벌금)함.
4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신학용의원 등 13인)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2014-05-09	여객운송사업자가 승객이 승선신고서를 제출한 때 실제 그 승객이 승선하였는지 확인하고 승선자 명단을 확보하도록 하며 위반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함.

- 기타 : 1건

번호	법안명	발의자	정당	발의일자	주요내용
1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의원 등 12인)	박인숙	새누리당	2014-04-25	선박 안전 관련 지도 감독에 있어서 7일 전 사전 통보 규정을 삭제함.

2) 선장 등 구조 의무 : 7건

번호	법안명	발의자	정당	발의일자	주요내용
1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등10인)	이명수	새누리당	2014-04-21	선박에 위험상황이 발생했을 때 선장이 인명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인명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형량강화(10년 이상의 유기징역)
2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등 10인)	이명수	새누리당	2014-04-23	유선사업자와 선원이 출항 전 승객에 대한 안전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않았을 경우 형사 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유선사업자 등이 안전교육을 받지 않았을 경우 근무할 수 없도록 하며, 유선 및 도선사업자 및 선원 인명 구조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거나(5년 이하 징역) 그로 인해 인명사고가 발생할 경우(10년 이상 유기징역)형사 처벌 하도록 함.
3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의원 등 12인)	박인숙	새누리당	2014-04-25	선장의 출항 전 안전검사 시행 및 직접지휘 구간 규정을 확대 하고, 선내 비상훈련 및 안내의무를 현행 시행규칙에서 상위법 조문으로 승격시킴. 선장이 인명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을때(10년 이상의 징역), 선박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을 때(5년이

					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벌칙조항을 강화함. 선박 안전 의무사항 위반 시 과태료와 벌칙규정을 정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함.
4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의원 등 11인)	윤명희	새누리당	2014-04-25	선장 뿐 아니라 해원도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인명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해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
5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목희의원 등 10인)	이목희	새정치민주연합	2014-04-28	선장이 항해 중 위난이 발생했을 때 여객이 그 선박에서 나가게 한 후가 아니면 선박을 떠나서는 안 되도록 문항을 구체화하고, 처벌을 강화함(인명구조 미흡은 1년 이상의 징역, 선박 및 물건 구조 미흡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 원 이하의 벌금).
6	수난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의원 등 10인)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2014-05-12	조난사고 원인을 제공한 선박의 선장 및 승무원이 신고하지 않아 사람을 죽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1년 이상 또는 1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7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등 19인)	박대출	새누리당	2014-05-22	선장이나 기장이 선박·항공기의 재난 시 승객에 대한 인명구조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승객이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승객이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 1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

2. 재난 대응 체계 관련 : 총 18건

1) 재난대응체계 개선 : 7건

번호	법안명	발의자	정당	발의일자	주요내용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의원 등 12인)	이찬열	새정치민주연합	2014-04-28	하위 법령에 위임되어 있는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기능을 법에 명시하고, 안전행정부장관이 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 반영하도록 해당 기관·단체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재난 원인 조사에 위기관리 매뉴얼 준수 여부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도록 함.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목희 의원 등 10인)	이목희	새정치민주연합	2014-04-28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하고,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재난안전관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중앙수습지원단 파견을 의무화 함. 중앙수습지원단 파견을 위해 민간전문가 인력을 확보하고, 상시 연락체계를 구축함. 재난대비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결과 등을 공개함.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등 10인)	박인숙	새누리당	2014-05-09	효율적인 재난 수습을 위해 중앙위원회가 필요한 경우 해당 재난에 관한 전문가가 중앙대책본부장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재난 관련 교육·훈련을 강화함.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에 소속 직원을 파견하고, 관련 교육 훈련을 강화함.
4	수난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손인춘의원 등 10인)	손인춘	새누리당	2014-05-15	중앙구조본부의 주관으로 수난구조협력기관 및 수난구조민간단체 등과 공동으로 매년 수난대비기본훈련을 실시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중앙구조본부 등에서 수난구조협력기관에 인력 및 장비의 지원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주 의원 등 11인)	이연주	새정치민주연합	2014-05-16	철도 차량·선박·항공기 등 주요 교통수단에 의한 사고를 교통사고에 포함하여 해당사고가 사회재난에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함.
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대운 의원 등 10인)	유대운	새정치민주연합	2014-05-20	재난의 중요성이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재난의 경우 국무총리가 중앙대책 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고, 중앙대책본부에 자연재난의 경우에는 소방방재청장을 차장으로, 사회재난의 경우에는 재난관리 주관 기관의 장과 소방방재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차장으로 둠. 대규모 재난을 수습하기 위한 중앙대책본부의 대응체계가 구성·운영되면 중앙대책 본부장이 중앙사고수습본부를 통합·운영하도록 함.
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문희상 의원 등 15인)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2014-05-21	국가 차원에서 전국 단일의 긴급전화번호 운영 시스템을 구축해서, 화재·재난·재해·테러 등 모든 종류의 위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이 시스템을 통해 신고·구조 요청과 이에 따른 대응이 이뤄지도록 함.

2) 재난피해자 등 보상 및 지원 개선 : 총 9건

- 재난관련자에 대한 상담, 심리치료 등 지원 강화 : 총 4건

번호	법안명	발의자	정당	발의일자	주요내용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목희 의원 등 10인)	이목희	새정치민주연합	2014-04-2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그 가족, 긴급구조지원요원, 자원봉사자, 응급조치 종사 명령을 받은 사람 등에게 상담·진료 및 치료실시를 의무화하고,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함.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등 20인)	김상희	새정치민주연합	2014-05-12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인한 직접 피해자와 그 가족, 긴급 구조 활동과 응급대책·복구 등에 참여한 사람들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지원체계 및 지원내용 등을 규정함.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주 의원 등 11인)	이연주	새정치민주연합	2014-05-1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직계가족, 긴급구조지원요원, 자원봉사자, 응급조치 종사명령을 받은 사람 등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및 치료를 최소 3년간 지원하도록 의무화함.
4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숙의원 등 10인)	김현숙	새누리당	2014-05-16	사회 및 국가적 재난, 자연재해, 가정폭력, 성폭력, 자살, 흉악범죄 피해 등 충격적 사건을 겪고 있거나 겪은 가족을 “위기가족”으로 규정. 긴급 가족 돌봄 및 가족심리, 상담치료 등을 지원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여성가족부장관이 위기가족지원 매뉴얼을 마련함.

- 재난피해자(가족) 보상 및 지원 범위 확대 : 총 4건

번호	법안명	발의자	정당	발의일자	주요내용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등 11인)	이찬열	새정치민주연합	2014-04-24	세월호 침몰사고와 같은 재난 사고의 피해자와 유가족 등에 대한 현 보상체계가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지원에 그치고 있어,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추가함.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등 10인)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2014-05-01	현행법상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 내용에 대학교 학자금 지원, 농업인·임업인·어업인 및

					중소기업인·소상공인의 생계비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함.
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21인)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2014-05-01	「근로기준법」에 ‘가족재난휴가’ 및 ‘가족재난휴직’ 제도를 신설함.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에게 30일의 범위에서 가족재난휴가를 허가하고, 이들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6개월 이내의 ‘가족재난휴직’을 허용하도록 함.
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21인)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2014-05-01	6개월 이내의 ‘가족재난휴직’을 허용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 고용보험기금으로 가족재난휴직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의사상자 범위 확대 : 1건

번호	법안명	발의자	정당	발의일자	주요내용
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언주의원 등 12인)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2014-05-15	직무와 연관되었다 하더라도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등을 구하려다 사망하거나 심각하게 부상을 입은 이들을 의사상자로 인정하도록 함. 다만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별도의 예우가 지원되므로 제외함.

3) 재난관련 보도개선 및 표현규제 : 총 2건

번호	법안명	발의자	정당	발의일자	주요내용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의원 등 10인)	한선교	새누리당	2014-05-01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통금지 대상정보에 국가 사회적 위난에 대해 허위사실이 포함된 정보를 추가하고, 국가의 위난관리를 방해하거나 공중의 정확한 정보의 형성 유통에 지장을 초래할 목적으로 그 위난의 발생여부 및 발생원인, 정부의 위난관리정책 또는 위난과 관련된 사망 실종 상해 등의 피해에 관해 허위사실이 포함된 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금지함.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의원 등 16인)	김상희	새정치민주연합	2014-05-12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는 국가 안보 위기, 성폭력범죄, 재난·재해 보도 등에 있어 지켜야 할 ‘자율협약 보도준칙’을 정하여 이를 지키도록 노력하고, 종사자 연수 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
---	--------------------------------------	-----	---------	------------	---

3. 안전관리 및 교육 관련 : 총 41건

1) 일반 안전 : 총 3건

번호	법안명	발의자	정당	발의일자	내용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의원 등 11인)	김경협	새정치민주연합	2014-05-08	선원 등 국민의 안전 생활과 밀접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는 기간제 근로자 사용을 금지함.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을동의원 등 10인)	김을동	새누리당	2014-05-12	매년 4월 16일을 국민 안전의 날로 정해 필요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함.
3	재난·재해 안전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박민수의원 등 12인)	박민수	새정치민주연합	2014-05-22	안전행정부 장관은 안전교육의 기본원칙·추진목표와 방향, 안전교육의 추진 내용에 관한 사항, 안전 교육과 관련하여 각부처 및 기관·단체의 협조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안전 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함.

2) 학교, 학생 안전 : 총 31건

- 교육 활동 전 안전점검 및 교육 강화 : 총 5건

번호	법안명	발의자	정당	발의일자	내용
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2014-04-29	학교장이 교육활동에 대한 안전대책을 점검·확인하도록 함. 학교장이 위탁 교육 활동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보험가입 여부,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프로그램인지의 여부 등을 점검·확인하도록 함.
2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혜자의원 등 12인)	박혜자	새정치민주연합	2014-04-29	학교장이 실시해야할 안전관리 조치에 학교 밖에서 행해지는 수련활동 및 체험활동에 대한 사전 안전 점검을 포함하도록 함.
3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박혜자의원 등 12인)	박혜자	새정치민주연합	2014-04-29	학교 안팎에서 행해지는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교육활동에 앞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4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도종환의원 등 17인)	도종환	새정치민주연합	2014-05-13	학교장이 학교 밖 교육활동을 실시할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활동 참여 규모 등이 포함된 교육활동 안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
5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박창식의원 등 10인)	박창식	새누리당	2014-05-16	학교장은 학교 밖 교육활동 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교육활동 특성에 맞는 맞춤형 안전교육을 미리 실시하도록 함.

- 안전사고 관련 교육 강화 : 총 6건

번호	법안명	발의자	정당	발의일자	내용
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의원 등 12인)	윤관석	새정치민주연합	2014-05-12	교육활동 규정을 신설하고, 학교장은 교육활동의 안전사고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교육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미리 제출하여 심의를 받도록 하며, 교육부장관은 안전한 교육 및 교육활동에 관한 환경 및 교육에 관한 기본 지침을 제정하도록 함.
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혜자의원 등 12인)	박혜자	새정치민주연합	2014-04-29	학교장의 관리 감독 하에 행해지는 수업, 특별활동, 재량활동, 과외활동, 수련활동 또는 체육활동 등의 활동에 대해 안전교육 등 안전대책을 마련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안전 종합계획 및 대책을 수립, 시행함.
3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	박인숙	새누리당	2014-04-29	교육활동의 정의에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 활동을 포함하고, 시행규

	개정법률안(박인숙의원 등 13인)				칙에 규정되어 있는 학교 안전교육의 실시 조항을 법률에 명시함. 학생 및 교직원들의 학교 안전 교육을 의무화하고, 교육부장관이 ‘학교 안전사고 관리 지침’을 작성·운용하여 각 학교에 보급하도록 함.
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우의원 등 10인)	이만우	새누리당	2014-05-02	18세 미만 학생들에게 교통안전 교육을 육상교통, 해상교통 및 항공교통의 안전에 대한 교육으로 내용을 명확히 함.
5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학용의원 등 18인)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2014-05-09	교원의 재난 관련 전문교육 강화, 학교장은 학생들에 대해 재난대비 훈련을 정기 혹은 수시로 실시함.
6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숙의원 등 13인)	김현숙	새누리당	2014-05-16	학생 뿐 아니라 교직원에 대하여도 안전관리 규정을 적용하여 안전 교육 등을 실시하게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학생안전관련 대책 마련 강화 : 총 14건

번호	법안명	발의자	정당	발의일자	내용
1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의원 등 12인)	윤관석	새정치민주연합	2014-05-1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의 안전한 교육 환경을 마련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의무화함.
2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등 10인)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2014-05-1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사항으로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안전교육 및 사고예방 대책 마련을 추가하고, 이를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등 10인)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2014-05-1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활동상 발생하는 모든 재해에 대한 대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실시하도록 의무화함.
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의원 등 17인)	김상희	새정치민주연합	2014-05-12	교육부장관은 “학생안전관리 기본계획”을, 교육감은 지역 실정에 맞는 “학생안전관리 지역계획”을, 학교장은 학교교육과정 또는 학교장이 정하는 교육계획에 따라 “학생안전관리 학교계획”을 세우도록 함.
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의원 등 15인)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2014-05-13	교육부장관은 교육환경과 안전교육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및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학교의 장은 학교 교육활동 시 안전대책, 안전지도,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시행하도록 함.
6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의원 등 15인)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2014-05-1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진흥시켜야 할 교육의 내용에 안전교육을 포함시킴.

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후의원 등 11인)	정진후	정의당	2014-05-13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교육활동의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또 학교 밖에서 교육활동을 실시하는 경우, 학교의 장이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
8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후의원 등 11인)	정진후	정의당	2014-05-1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교육과정에서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을 병행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함.
9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진후의원 등 11인)	정진후	정의당	2014-05-13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 밖 교육활동의 안전한 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우선 지원하도록 하고, 관계 기관의 지원 책무까지 명확하게 규정함. 또한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함.
10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의원 등 13인)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2014-05-1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교육과정에서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을 병행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함.
1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의원 등 13인)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2014-05-13	학교 밖 교육활동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교육부장관이 작성한 학교 밖 교육활동에 관한 기본지침에 따라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계획을 수립하여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 한편, 안전교육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도록 함.
1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의원 등 14인)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2014-05-13	교육부장관이 안전교육에 관한 기본지침 등을 수립하도록 하고, 학교장이 안전교육을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도록 함. 학교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 참여자의 보호자를 포함한 가족에 대해 상담 및 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
1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의원 등 10인)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2014-05-15	아동에 대해 비상탈출교육, 수영교육 등 상시 체협교육을 통해 항공선박 자동차 등의 사고에 대처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
14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숙의원 등 11인)	김현숙	새누리당	2014-05-16	교육부장관에게 학교안전교육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고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한 실습교육을 진행하도록 함.

- 교육활동의 안전수준 강화 : 총 5건

번호	법안명	발의자	정당	발의일자	내용
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등 10인)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2014-05-12	수련활동, 수학여행 등 학교 밖 교육활동을 실시할 때 인증 받은 단체 여행 프로그램을 이용하도록 하고, 적합한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 학교장은 교육감에게 4개월 전까지 인증 받지 않은 단체여행 프로그램에 대한 이용 허가를 신청해야 함. 교육감은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해야 함.
2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의원 등 17인)	김상희	새정치민주연합	2014-05-12	단체여행 프로그램 인증위원회를 구성하여 단체여행 프로그램 인증 제도를 운영함.
3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김상희의원 등 17인)	김상희	새정치민주연합	2014-05-12	수련활동, 수학여행 등의 학교 밖 교육활동을 실시할 때 학교에서 인증 받은 단체여행 프로그램을 이용하도록 함.
4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의원 등 14인)	도종환	새정치민주연합	2014-05-13	한국 청소년활동 진흥원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위원회에 안전에 필요한 전문자격이나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을 1명 이상 포함함.
5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의원 등 14인)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2014-05-13	교육활동의 정의에 수학여행, 수련활동 등의 학교 밖 교육활동이 명확하게 포함되도록 규정함. 학교 밖 교육활동 중 수련활동은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라 인증된 프로그램을 사용하도록 하고, 수학여행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인증된 ‘수학여행 서비스’ 프로그램을 사용하도록 함.

- 기타 : 1건

번호	법안명	발의자	정당	발의일자	내용
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완중의원 등 11인)	성완중	새누리당	2014-04-25	매년 7월 18일을 학생 안전의 날로 정해 필요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함.

3) 건축 철도 안전 : 총 7건

번호	법안명	발의자	정당	발의일자	내용
1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 등 25인)	인재근	새정치민주연합	2014-05-01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한 건축주 및 공사 시공자에 대한 처벌조항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 함.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 등 26인)	인재근	새정치민주연합	2014-05-01	100명 이상의 불특정 다수인이 동시에 이용하는 1천 제곱미터 이상의 시설은 특정관리대상 시설 등에 포함시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관리대상시설 등의 소유주에게 소관 시설에 대한 안전진단 또는 정밀 안전 점검의 의무를 부과함.
3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표의원 등 10인)	김한표	새누리당	2014-05-09	폭설 등 증가하는 기상이변에 대비한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피이비 등 특수구조물에 대한 관리·감독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경주마우나 오션리조트 사고와 같은 대형 안전사고의 재발을 방지함.
4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노근의원 등 11인)	이노근	새누리당	2014-05-1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용 내구연한을 초과한 철도차량은 운행할 수 없도록 하되, 정밀진단을 받아 안전운행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 내구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5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노근의원 등 10인)	이노근	새누리당	2014-05-13	철도운영자 등은 자신이 고용하고 있는 철도종사자에게 정기적으로 철도 안전에 관한 교육을 하고,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함.
6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의원 등 10인)	이찬열	새정치민주연합	2014-05-09	철도 종사자의 안전교육 의무조항을 신설함.
7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	새정치민주연합	2014-05-22	철도차량 내구연한을 규정하고,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는 정밀진단을 거친 경우 최장 10년 내에서 내구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정밀진단 등을 통해 차량 내구연한을 연장할 경우 3년 마다 정밀진단을 받게 함.

4. 세월호 침몰 사고 피해자 지원 및 진상 규명 : 총 7건

번호	법안명	발의자	정당	발의일자	내용
1	세월호 침몰사고 신속구조, 피해지원 및 진상규명을 위한 결의안(김영환 의원 등 3인 외 127인)	김영환	새정치민주연합(안산상록을)	2014-04-28	아래 3번 결의안에 발의 내용이 반영되어 대안반영폐기
2	세월호 침몰 피해자 및 피해지역 지원을 위한 결의안(김명연 의원 외 155인)	김명연	새누리당(안산단원갑)	2014-04-28	아래 3번 결의안에 발의 내용이 반영되어 대안반영폐기
3	세월호 침몰사고 신속구조, 피해지원 및 진상규명을 위한 결의안(대안)	위원장(김태환)	새누리당	2014-04-29	세월호 침몰사고에 대해 정부의 신속한 실종자 수색 작업과 구조 활동을 촉구하고, 국회와 정부가 피해자와 피해 가족, 피해 지역에 대한 긴급 구호 및 원활한 지원 사업 추진하며, 관련 책임자를 엄중 처벌할 것 등을 촉구함.
4	세월호 침몰 희생자 유가족과 생존자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긴급지원 법률안(장하나의원 등 24인)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2014-05-14	희생자 유가족들과 생존자들의 원활한 심리치료를 위해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의 유급휴직 또는 휴업을 보장하고, 그 휴직 및 휴업에 따른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내용의 긴급지원 특별법 제정
5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정진후의원 등 11인)	정진후	정의당	2014-05-15	세월호 침몰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 유가족 및 피해지역 등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수습 및 지원 대책을 수립·시행함.
6	세월호 4·16사고 반성과 진상조사 및 국가재난방지체계 혁신을 위한 특별법안(서청원의원 등 12인)	서청원	새누리당	2014-05-15	세월호 참사에 대한 피해자보상, 배상, 원인규명, 재발방지책 마련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초당적인 회의체(국회의장을 위원장으로)를 구성하고, 원인규명을 위한 자료수집, 분석을 통해 진상보고서를 작성하며, 국가 재난대비 체계의 근본적인 혁신을 위한 후속대책을 수립함.
7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	이완구, 박영선	여야공동	2014-05-21	직·간접적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 선장과 승무원의 불법 행위와 탈출 경위 및 승객 안전조치 여부 초기 신고 상황 대응, 보고의 적절성, 대응실패 원인규명 및 재난대응 시스템 점검 관련기관의 탑승자 구조과정의 문제점 및 실종자 수색과정의 문제점 해수부, 해경, 한국해운조합, 한국선급 업무수행의 적정성 여부 정부지원 대책의 적절성 및 후속 대책 점검 재난관리 체계의 점검 및 제도개선

					언론의 재난보도 적절성과 문제점 (㉞)청해진해운의 불법적인 회사운영, 유병언 일가의 불법행위 관련 사안 위 조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
--	--	--	--	--	--

5. 공직자 퇴직 후 취업제한 : 총 5건

번호	법안명	발의자	정당	발의일자	내용
1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1인)	김재원	새누리당	2014-04-25	공직퇴직 후 취업제한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및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단체에도 확대 적용하도록 함.
2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의원 등 10인)	윤상현	새누리당	2014-05-01	공기업 등 공직유관단체와 그 밖에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무집행의 공정성 확보 등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단체를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추가함.
3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전순옥의원 등 11인)	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	2014-05-08	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가운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단체나 중앙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을 임명하거나 임원의 선임에 승인하는 법인·단체도 취업제한 대상 사기업체 등의 범위에 포함시킴.
4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의원 등 10인)	이찬열	새정치민주연합	2014-05-13	공개대상자는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함. 사기업체등에 취업한 공개 대상자는 퇴직 전 2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기관이 그 사기업체 등에 대해 처리하는 모든 업무를 퇴직한 날부터 2년 동안 취급할 수 없도록 함.
5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제남의원 등 10인)	김제남	정의당	2014-05-20	취업제한 대상 업무를 퇴직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에서 퇴직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관의 업무로 확대, 취업제한 기간을 퇴직일부터 3년으로 연장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을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추가함.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 심사결과 등을 주기적으로 공개, 취업 제한, 업무취급 제한 및 행위제한을 위반한

					공무원과 공직유관 단체의 임직원에 대한 벌칙을 3년 이하 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함.
--	--	--	--	--	--

참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세월호 참사 이후, 국회에는 어떤 법이?

발행일 2013. 05. 27

발행처 참여연대 시민감시1팀

담 당 이지현 팀장 02-723-7104 jhlee@pspd.org

Copyright ©참여연대, 2014 ※본 자료는 참여연대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정부보조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대표전화 02-723-5300 회원가입 02-723-4251

주소 110-043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9길16 (통인동) 홈페이지 www.peoplepower21.org